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4.9.12)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규 창]

목 차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4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0
5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7	거창군립 한미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개정이유

- 가. 직업의 다양화에 따른 주말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부모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완화
(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6조)
 -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 ⇒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
- 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범위 설정(안 제17조)
 - 학자금 전액 ⇒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 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안 제20조)
 - 창조정책과 ⇒ 창조산업과, 교육문화센터 ⇒ 문화센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타 ⇒ 다른, 당해 ⇒ 해당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 조치 : 2015년 예산 20,000천원 추가 확보예정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또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제6조, 제11조, 16조에서**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부 또는 모로 완화 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범위를 “학자금 전액”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음

- **안 제20조에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음

* 창조정책과 ⇒창조산업과, 교육문화센터⇒문화센터

- 따라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조건 완화 및 학자금 지원의 형성성을 감안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 6. (생략)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정부 규제개선 대책관련 자치법규 개선과제 반영
 -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서 제출 기한 폐지(안 제4조제2항)
 -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6종 ⇒ 4종(안 별지 제1호 서식)
 -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상표법」 제5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7.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아. (생략)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6.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7.8.] [법률 제12201호, 2014.1.7., 일부개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상표법」

[시행 2014.6.11.] [법률 제12751호, 2014.6.11., 일부개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개정이유

- 경남도립거창대학 내 2013.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거창 미래전략연구소」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른 본 조례 폐지

3. 주요골자

- 이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7. 17. ~ 8.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12.22 조례 제18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여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 설립) 연구소의 설립은 거창군과 경남도립 거창전문대학(이하 “거창전문대학”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전문대학 내에 둔다.

제4조(주요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
2.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간행물 발간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출연금) ①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 학장 2인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약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의 상호 운영협약서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제정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근거 및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 마.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 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함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4. 7. 15. ~ 8. 04.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에서 조례제정근거 및 목적을 정하고,

- **안 제5조** 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내용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음

- **안 부칙**에서는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음

○ 본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시행 2013.12.5] [법률 제11854호, 2013.6.4, 일부개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5.18]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제정이유

- 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대상(안 제3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 다. 공동추진(안 제6조)
- 라.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 12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 되었음
- 라. 그 밖에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6. 25. ~ 7. 1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으로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 . 비문해자 조사실시
 -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 . 학력인증제에 필요한 지원
 - .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 2014.1.28.]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개정이유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 나. 「국유재산법」 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사용)료율 변경 및 신설(안 제24조)
- 다.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 반환이자 인하 및 신설(안 제35조·제81조·제81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8. ~ 8.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반영 하였으며,

- **안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사용)료율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 주거용 : 1천분의 25 ⇒ 1천분의 20(인하)

. 사회복지사업, 종교목적 : 1천분의 25(신설)

. 소상공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신설)

- **안 제35조, 제81조, 제81조의 2에서**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 이자율 및 과오납 반환이자 인하 및 신설하였음

구 분		조 문	기 준		개 정 안	
			근거	이자율	근거	이자율
분납 이자율	매각대금	제35조	조례	3~6%	조례	3%
	변상금	제81조	시행령	6%	조례	3%
과오납반환기산금 이자		제81조의2	시행령	6%	조례	3%

○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가.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 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정비

1. 지방재정 집행과정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2011.5 : 공유재산 관리과정의 특혜요인 제거)
 - 추진배경 : 지방재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선심성·특혜소지 사전 차단, 지방재정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평가대상 : 지하도 상가 계약, 체육시설 위탁, 공공청사 시설운영 등
 - 문제점 : 지하상가 임대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존재
 - 지하상가 임대, 체육시설 위탁시 특정단체 위탁 및 수의계약, 10년 초과 지속적 계약연장 등
 - 청사 등 공공시설에 무상임대 단체 선정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
 - 친목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의원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제공(기초지자체)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결정의 투명성 확보
 - 지하도상가 등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연장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통제강화
 -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시 경쟁체제 강화
 -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5조)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안, 법령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무상대부는 생략가능)
 -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 ※ 기부채납가액 한도내 20년 무상사용 가능,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 범위내에서 갱신가능(법 제21조제3항)
 - 공유재산 관리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안 제22조제5항)
2. 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3. 7)
 - 권고사유 :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 제도개선사항 발굴
(학교법인 ○○재단의 공유재산 대부관련 대부료율 반환 요청)
 - 제도개선 권고의견
 - 사립학교(초중고)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 구간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하는데 더 이상 조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대부료율 조항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는 모호한 문구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에 맞게 다른 용어(예시 :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대체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37호, 2014.1.14., 일부개정]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국제기구(제2조 관련)

구 분	국 제 기 구
국제연합과 그 산하 기구·전문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UN)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인구기금(UNFPA)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유엔대학(UNU) · 유엔봉사단(UNV) · 세계식량이사회(WFC) · 세계식량계획(WFP)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만국우편연합(UPU) ·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기상기구(WMO) · 국제원자력기구(IAEA)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유엔환경계획(UNEP)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 유엔아동기금(UNICEF) · 유엔마약위원회(UNCND) · 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UNCTC)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금융공사(IFC) · 국제개발협회(IDA) · 세계관광기구(UNWTO)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세계무역기구(WTO) · 체네바군축회의(CD) ·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정부 간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WHO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C) · 아시아·아프리카농촌개발기구(AARDO) ·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APT)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아시아·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 국제교육국(IBE) · 국제도량형국(IBWM)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 국제민방위기구(ICDO) · 국제수로기구(IHO)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국제수역사무국(OIE)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국제이주기구(IOM) · 국제포플러위원회(IPC) · 인도·태평양수산물위원회(IPFC) · 국제포경위원회(IWC)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세계관세기구(WCO)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 아시아개발은행(ADB)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 국제백신연구소(IVI) • 유엔기념공원(UNMCK) • 국제무역센터(ITC) •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의회연맹(IPU) • 콜롬보플랜(Colombo Plan) • 지구환경금융(CEF) • 국제남·아연연구그룹(ILZSG) • 상품공동기금(CFC) •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 아시아·태평양양수산위원회(APFIC) •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 국제사탕기구(ISO) • 생물다양성협약(CBD) • 국제곡물이사회(IGC)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 국제박람회기구(BIE) • 국제해저기구(ISA) •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상설중재재판소(PCA) • 국제에너지기구(IEA) • 국제식물신품보호연맹(UPOV) • 미주개발은행(IDB) •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 법률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국제미작연구소(IRRI)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아시아에서의해적행위및선박에대한무장강도행위퇴치에관한지역협력협정정보공유센터(ReCAAP ISC)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 아시아·태평양양식량비료기술센터(FFTC)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p>준정부 간 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최고감사기구(ASOSAI) •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 국제항만협회(IAPH) • 국제기록보존기구(ICA) • 국제군인의약협회(ICMM)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 국제표준화기구(ISO) •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요약

조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제2조(관리책임)	모든 공유재산 → 거창군 공유재산	해당 공유재산 범위 한정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변경 및 폐지 근거 명기 및 수정 - 기능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사용허가·대부 · 기부채납 재산 사용허가 갱신 - 법령에 따른 무상사용은 심의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타시도 형평성
제15조의2(수익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신설 :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의한 수익계약 가능 기구.단체 정의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시 표기사항 명시 - 수탁받는 자 : 관리수탁자로 통일 - 관리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원칙 - 해당 법 조문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비(관리수탁자) - 관리위탁 갱신시 검토사항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 대부재산 관리소홀 및 재산가치 감소시 계약해지 및 환수조치 삭제	- 등록규제 철폐(법 규정만으로도 목적 달성)
제21조(대부료의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 천분의 25 → 천분의 20 - 사회복지사업 등 : 천분의 25 - 소상공인 사용 : 천분의 30 	- 국유재산법과 형평성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공용면적 산출산식 변경	-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료 납부시기 정비 - 분납 이자율 규정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 착한요율 - 영 개정사항 반영
제34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수익계약 사유 정비	-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별 분할납부 사유 정비 - 분납 이자율 규정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개정사항 반영 - 규제완화 : 착한요율
제81(변상금의 분할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이자율 규정 : 3% - 100만원 미만 분납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개정사항 반영 - 규제완화 : 착한요율
제81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개정사항 정비 - 규제완화 : 착한요율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08.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08. 20

2. 개정이유

-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독서진흥 발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도서대출 이용자 확대(안 제6조)
- 나. 도서관 이용허가 할 수 없는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삭제(안 제10조제2항제3호)
- 다.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시간 연장함(안 제11조)
- 라. 도서관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변경(안 제13조제2항제1호)
- 마. 입관 제한 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 삭제(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완화함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독서진흥발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 “군에 주소를 둔 회원”을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회원”으로 도서대출 이용자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도서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 중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안 제11조에서**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시간을 현행 09:00부터 18:00를 09:00부터 22:00로 변경 연장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을 변경함(유지관리상 ⇒ 안전관리상)
 - **안 제15조에서** 입관 제한 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였음
-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